

2022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및 조기복학신청자 복학원 접수

2022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및 조기복학신청자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복학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관련근거

학칙
제29조(복학) 복학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. 복학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0.02.17., 2021.04.28>
학사내규
제81조(복학)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(전역예정자 포함) 또는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복학원과 증빙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에 복무 중인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,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. <개정 2020.02.17.>
1. 질병휴학자: 건강진단서 1통
2. 입영휴학자
가. 전역증(또는 전역예정증명서) 사본 2통
나. 주민등록초본 2통
② 입대휴학한 자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내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대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교학지원처에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02.17., 2020.06.15., 2021.04.28.>
③ 학기 중에 임신·출산·육아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학기의 3/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02.17.>
④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. 다만, 3항의 사유에 의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02.17.>
부칙
1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45조(수업), 제80조1(입대휴학), 제81조(복학)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2. 복학신청방법: 복학원 제출 → 수강신청 → 등록기간 내 수업료 납부

<2022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>	
2022. 1. 19. (수) ~ 2022. 3. 8. (화)	1학기 복학원 제출
2022. 2. 7. (월) ~ 2022. 2. 11. (금)	1학기 수강신청기간
2022. 2. 21. (월) ~ 2022. 2. 25. (금)	1학기 등록기간 (수업료 납부기간)
2022. 3. 2. (수) ~ 2022. 3. 8. (화)	1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
2022. 3. 10. (목) ~ 2022. 3. 11. (금)	1학기 추가 등록기간(수업료 추가 납부기간)

3. 제출방법: 복학원(첨부파일) 메일 및 팩스 제출

가. 메일: 201761087@ggu.ac.kr

나. 팩스: 041-731-3219

*반드시 본인 및 보호자 자필서명 후 발송 요망. 공란일 경우 처리 불가.

4. 제출기간: (1차) 2022. 1. 19. (수) ~ 2022. 2. 4. (금)

(2차) 2022. 2. 7. (월) ~ 3. 8. (화)

※ 복학처리가 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불가능하여,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제출하시는 경우 수강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. (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 가능)

※ 등록기간(2022. 2. 21. ~ 2. 25.) 이후에 복학원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등록기간 (2022. 3. 10. ~ 3. 11.)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※ 개강일(2022. 3. 2.) 이후 복학원을 제출하시는 경우 출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	일	월	화	수	목	금	토	일정	
2 월			1	2	3	4	5		
	6	7	8	9	10	11	12	7(월)	수강신청기간
	13	14	15	16	17	18	19	18(금)	복학원 및 휴학원 접수 마감
	20	21	22	23	24	25	26	21(월)	등록기간(~25일)
	27	28							
3 월			1	2	3	4	5	2(수)	개강
	6	7	8	9	10	11	12	2(수)	수강정정기간(~8일)
	13	14	15	16	17	18	19	10(목)	추가등록기간(~11일)
	20	21	22	23	24	25	26		
	27	28	29	30	31				

5. 필독사항

가.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학처리가 불가하며,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정정 불가함.

나. 복학원 제출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수업료 미납일 경우 복학이 취소되니, 복학대상자 학생들은 반드시 우편/메일 발송된 안내문을 통하여 수업료 금액 및 장학금 확인 요망바람.

※ 우편발송 시 주소변경/미수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메일로 동일한 문서 발송

다. 조기복학신청자는 반드시 조기복학신청원 양식을 제출해야함.

라. 본인 및 보호자 서명은 직접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날인만 인정 가능함. 컴퓨터 키보드로 작성한 것은 서명으로 인정 불가함.

6. 문의

가. 복학원 관련 문의: 교무지원팀 학적담당자 (041-731-3214)

나. 장학금 관련 문의: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 (041-731-3232)

교무지원팀